

지자체, 빈집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 추진

울산시 건축주택과
2019.2.13.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도시경관팀
2019.2.14.

광주시 도시정비과
2019.2.25.

울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정

울산시가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하였다.

제정안에 따르면 비구역 해제지역 등 한정된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했던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일반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도 가능해진다. 사업 대상 주택 규모도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10호 미만에서 18호 미만으로, 단독·다세대주택은 20호 미만에서 36세대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공동이용시설(보육시설, 작은 도서관, 노인정 등) 설치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하고,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을 20% 이상 공급 시 법정상한 용적률까지 허용하는 등 주거 편의와 사업성 향상을 고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6개월이 지나면 사업 시행을 위한 철거명령이 가능해져 도심 내에 흉물로 방치된 빈집 문제 해결을 더욱 적극적으로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빈집을 주거·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프로젝트' 추진

전라북도는 인구 감소로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주거·문화공간으로 재생해 주거 취약계층과 청년 활동가, 귀농·귀촌자 등에게 무상 임대하는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9년에는 80동에 총 16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동당 최대 2,000만 원을 빈집 재생을 위한 보수비용으로 지원하고 세대장한 공간을 수요자에게 최대 5년간 무상으로 임대하게 된다. 도는 흉물로 방치된 빈집을 활용해 저소득계층, 청년, 귀농·귀촌자 등에게 새 보금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마을 공부방·책방·만화방 등으로 조성하여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빈집실태조사를 통한 빈집 활용, 도시재생 연계 기를 마련

광주시가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자치구에 사업비를 지원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으로 추정되는 빈집에 대해 ▲빈집 여부, ▲소유권 등 권리관계, ▲빈집 발생 사유, ▲빈집 설계도서, ▲시설물(대지 포함)의 안전 상태 및 정비사업에 대한 소유자 의견 수렴 등을 오는 5월까지 전수 조사한다는 방침이며, 정비계획을 수립할 관내 빈집을 확정하게 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까지 지역적 특화요소 등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구축된 빈집 정보시스템에 이를 게재한 후 소유자 동의를 거쳐 시, 자치구 및 공기업 등에서 도시재생 또는 공공사업 등에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